

< 일 러 두 기 >

- 법령명 : 식품원료 대두추출물의 사용제한
- 제정일 : 2024년 7월 11일
- 최종개정일 : -
- 출처 : 대만 식품약품관리서 (방문일 : 2024년 9월 20일)

식품원료 대두추출물의 사용제한

1. 본 규정은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5조의1 제2항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한다.
2. 본 규정에서 정한 대두추출물 원료는 대두(*Glycine max*)의 씨앗을 추출하여 얻은 것이다.
3. 전 항에서 얻은 대두추출물 원료의 일일 섭취제한량은 이소플라본(isoflavones)으로 계산하여 50mg이다.